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매뉴얼

2025. 1.

경 기 도

1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010109) / 시·도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추진지역 (31개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	○	○	○	○	○	○	○	○	○	○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	○	○	○	○	○	○	○	○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	○	○	○	○	○	○	○	○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 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욕구기준	<p>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p>※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p> <p>2. 욕구판단은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40%;">제출 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td> <td>추천공문 또는 추천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td> <td>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각 지역 의료기관 의사</td> <td>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d>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td> <td>추천서</td> </tr> </tbody> </table>										연번	구분	제출 서류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③	각 지역 의료기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연번	구분	제출 서류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③	각 지역 의료기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추천서																							

항 목	내 용							
		<table border="1" data-bbox="518 315 1385 651"> <tr> <td data-bbox="518 315 587 539">⑤</td> <td data-bbox="587 315 963 539">Wee센터(Wee클래스)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Wee센터(Wee클래스)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td> <td data-bbox="963 315 1385 539">추천서</td> </tr> <tr> <td data-bbox="518 539 587 651">⑥</td> <td data-bbox="587 539 963 651">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td> <td data-bbox="963 539 1385 651">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td> </tr> </table> <p data-bbox="518 696 1385 1294"> ▶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고, -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PSI-4, K-WAIS, K-ABC2, k-ctoni-2, ADHD, K-CDI, MMPI, HTP, SCT, RCMAS, SMS, KRPC, KFD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언어평가도구는 SELSI, K M-B CDI, PRES, LSSC, REVT, U-TAP, U-TAP2, APAC, P-FA, P-FA2, KOLRA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실시함.(부모보고(SELSI, K M-B CDI) 검사 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관찰평가 포함하여 실시) </p> <p data-bbox="518 1335 1385 1592">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p>	⑤	Wee센터(Wee클래스)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Wee센터(Wee클래스)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추천서	⑥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
⑤	Wee센터(Wee클래스)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Wee센터(Wee클래스)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추천서						
⑥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						
	우선순위	<p data-bbox="518 1626 1385 1989">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③ 의사 진단서 제출자 ④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⑥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⑧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p>						

항 목	내 용						
	중복제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과 중복지원 불가					
제공기관 기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슈퍼바이저	<p>▶ 슈퍼바이저</p> <p>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검직할 수 있음</p> <p>1)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특수교육학, 교육학 (심리전공 석사학위 이상)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②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p>※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슈퍼바이저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함</p> <p>2) 슈퍼바이저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의 사례발표회 또는 사례회의를 연1회 이상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필요시 개인별 슈퍼비전 제공 가능 - 슈퍼비전 시 참석명단(서명 필요) 및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비 					
	제공인력	<p><①, ②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523 1301 1385 1995"> <thead> <tr> <th data-bbox="523 1301 635 1346">구분</th> <th data-bbox="635 1301 1385 1346">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23 1346 635 1570">① 국가 자격증</td> <td data-bbox="635 1346 1385 1570">“장애인복지법” 제72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td> </tr> <tr> <td data-bbox="523 1570 635 1995">② 학위 소지자</td> <td data-bbox="635 1570 1385 1995">심리학, 상담학, 해당분야 치료상담학 (언어, 미술, 음악, 놀이, 인지, 행동, 재활 등), 특수교육학, 교육학 (상담심리전공 석사 학위 이상)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㉞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㉟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① 국가 자격증	“장애인복지법” 제72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② 학위 소지자
구분	내용						
① 국가 자격증	“장애인복지법” 제72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② 학위 소지자	심리학, 상담학, 해당분야 치료상담학 (언어, 미술, 음악, 놀이, 인지, 행동, 재활 등), 특수교육학, 교육학 (상담심리전공 석사 학위 이상)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㉞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㉟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항 목	내 용								
	<p>▶ “군”단위 지역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음악, 행동, 인지, 놀이,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도 신규 제공인력 등록 가능. (단, 1년 내 필수전공과목 6개 영역 필수 이수해야만 차년도에도 사업 참여 가능)</p> <p>*민간자격증 소지자란?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에 등록된 자격소지자에 한함</p> <p>※ 필수전공과목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진 과목) : 상담관련분야 교과목 중</p> <p>① 상담이론과 실제 ② 면접원리 ③ 심리측정 평가 ④ 발달이론 ⑤ 이상심리 ⑥ 각 제공인력 관련 치료분야 이론 또는 실제 등 6개 영역의 각 영역내 1과목 이상 수강 필수 (교과목 이수 증빙자료 제출)</p> <p><각 서비스별 인정 자격범위> - 해당 분야의 서비스는 해당분야 자격 소지자만 인정</p> <table border="1" data-bbox="523 981 1377 1346"> <thead> <tr> <th>구분</th> <th>인정 자격</th> </tr> </thead> <tbody> <tr> <td>언어치료</td> <td>- 언어재활사</td> </tr> <tr> <td>놀이, 미술, 음악치료</td> <td>- 국가자격 - 해당 치료분야의 학위자격 + 실무경력</td> </tr> <tr> <td>인지치료</td> <td>- 국가자격 - ②에서 제시한 학위자격 + 인지관련 2과목 이상 이수 + 실무경력 ex) 인지(학습)치료, 학습장애치료, 장애특수교육 중 2과목</td> </tr> </tbody> </table> <p>※ (신규 제공인력 등록시) 시군에 제공인력 보고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사전 자격 심의 필수</p>	구분	인정 자격	언어치료	- 언어재활사	놀이, 미술, 음악치료	- 국가자격 - 해당 치료분야의 학위자격 + 실무경력	인지치료	- 국가자격 - ②에서 제시한 학위자격 + 인지관련 2과목 이상 이수 + 실무경력 ex) 인지(학습)치료, 학습장애치료, 장애특수교육 중 2과목
구분	인정 자격								
언어치료	- 언어재활사								
놀이, 미술, 음악치료	- 국가자격 - 해당 치료분야의 학위자격 + 실무경력								
인지치료	- 국가자격 - ②에서 제시한 학위자격 + 인지관련 2과목 이상 이수 + 실무경력 ex) 인지(학습)치료, 학습장애치료, 장애특수교육 중 2과목								
지원기간 및 재판정	<p>① 기 간 : 12개월</p> <p>② 재판정 :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p>								
서비스 횟수/가액/결제	<p>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p> <p>㉠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p> <p>㉡ 집단(1:2~3) : 주 1회(월 4회)</p> <p>- 집단(1:2) 서비스 시간 : 회당 70분</p> <p>- 집단(1:3) 서비스 시간 : 회당 90분</p> <p>※ 집단서비스의 경우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1:2~1:3) 허용</p>								

항 목	내 용																															
	<p>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p> <table border="1" data-bbox="360 383 1390 757">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162,000원(90%)</td> <td>18,000~88,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d> <td>144,000원(80%)</td> <td>36,000~106,000원</td> </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td> <td>126,000원(70%)</td> <td>54,000~124,000원</td> </tr> <tr> <td>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td> <td>90,000원(50%)</td> <td>90,000~160,000원</td> </tr> <tr> <td>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td> <td>36,000원(20%)</td> <td>144,000~214,000원</td> </tr> </tbody> </table> <p>※ 단, 자격유예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은 최저기준적용 ※ 본인부담금은 상한선 내로 기타경력, 학위,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의해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 단,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단가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4호] 활용)</p> <p>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76 1014 1214 1328"> <thead> <tr> <th rowspan="2">등급</th> <th>정부지원금</th> </tr> <tr> <th>개별(1:1), 집단(1:2~3인) / 주 1회, 월 4회</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40,500원</td> </tr> <tr> <td>2등급</td> <td>36,000원</td> </tr> <tr> <td>3등급</td> <td>31,500원</td> </tr> <tr> <td>4등급</td> <td>22,500원</td> </tr> <tr> <td>5등급</td> <td>9,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90%)	18,000~88,000원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80%)	36,000~10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70%)	54,000~12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90,000원(50%)	90,000~16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36,000원(20%)	144,000~214,000원	등급	정부지원금	개별(1:1), 집단(1:2~3인) / 주 1회, 월 4회	1등급	40,500원	2등급	36,000원	3등급	31,500원	4등급	22,500원	5등급	9,000원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90%)	18,000~88,000원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80%)	36,000~10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70%)	54,000~12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90,000원(50%)	90,000~16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36,000원(20%)	144,000~214,000원																														
등급	정부지원금																															
	개별(1:1), 집단(1:2~3인) / 주 1회, 월 4회																															
1등급	40,500원																															
2등급	36,000원																															
3등급	31,500원																															
4등급	22,500원																															
5등급	9,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절차	<p>①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52 1442 1390 2000">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기본 서비스</td> <td>㉞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td> <td></td> </tr> <tr> <td>㉟ 서비스내용</td> <td></td> </tr> <tr> <td>놀이 프로그램</td> <td>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td> <td></td> </tr> <tr> <td>언어 프로그램</td> <td>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td> <td></td> </tr> <tr> <td>인지 프로그램</td> <td>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td> <td></td> </tr> <tr> <td>미술 프로그램</td> <td>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td> <td></td> </tr> <tr> <td>음악 프로그램</td> <td>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 지원을 하며 문제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향상</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㉞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㉟ 서비스내용		놀이 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언어 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인지 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미술 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음악 프로그램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 지원을 하며 문제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향상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㉞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㉟ 서비스내용																															
	놀이 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언어 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인지 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미술 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음악 프로그램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 지원을 하며 문제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향상																															

항 목	내 용							
	<p>㉔ 부모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㉕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예시</p> <p>개별(1:1) :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p> <p>집단(1:2) : 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p> <p>집단(1:3) : 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㉖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㉗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p>※ 부모상담 관련사항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p>							
부가 서비스	<p>㉘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p> <p>㉙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서비스</p>	선택적 제공						
	<p>㉚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심리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 (사후심리검사 의무 실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사전·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육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 </div> <p>※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 함(필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K-CDI, ADHD, RCMAS, K-DST, 읽기 유창성과 독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검사지(KICE Reading inventory)</p> </div> <p>※ 필요 시 기관의 재량으로 아래의 심리평가도구(안) 검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73 1863 483 1912">구분</th> <th data-bbox="483 1863 715 1912">서비스 영역</th> <th data-bbox="715 1863 1318 1912">심리평가도구</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3 1912 483 1998">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483 1912 715 1998">언어프로그램</td> <td data-bbox="715 1912 1318 1998">PRES, REVT, SELSI, U-TAP, U-TAP2, APAC, P-FA, P-FA2, LSSC, KOLRA, K M-B, CDI, 관찰평가</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 U-TAP2, APAC, P-FA, P-FA2, LSSC, KOLRA, K M-B, CDI, 관찰평가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 U-TAP2, APAC, P-FA, P-FA2, LSSC, KOLRA, K M-B, CDI, 관찰평가						

항 목	내 용	
	놀이미술음악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ADHD, SMS, KRPC, KFD
	인지프로그램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PSI-4, K-WAIS, K-ABC2, k-ctoni-2, KNISE-BAAT, BASA, 관찰평가
	공통(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K-PRC, K-CYP
유의사항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2-1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130209) / 시·군 공동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추진지역 (18개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	○	X	X	○	○	○	○	○	○	○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X	X	○	○	X	○	X	X	○	X					
	고양	남양주	양주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X	X	○	○	○	○	X	X	X						
이용대상 (소득·연령· 육구충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연령기준	만 7세 ~ 15세이하 아동													
	육구기준	없음													
	우선순위	법정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장애인가족(부모 또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한함),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가정위탁아동, 북한이탈주민가정													
	중복제한	없음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p>▶ 기본자격 <㉓, ㉔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제공인력은 기본서비스 모두 제공 가능(현장체험 포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0%;">㉓ 국가 자격 증</td> <td>“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td> </tr> <tr> <td>㉔ 학위 소지 자</td> <td>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td> </tr> </table>											㉓ 국가 자격 증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㉔ 학위 소지 자
㉓ 국가 자격 증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㉔ 학위 소지 자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항 목	내 용																		
	<p>▶ 예외사항</p> <p>※ 현장체험만 제공하는 인력에 한하여 ㉔의 자격기준 충족 시 제공인력 인정</p> <p>※ ㉔제공인력은 현장체험 통합형 중 현장체험만 가능하며 다른 서비스 제공 불가</p> <table border="1" data-bbox="513 495 1390 808"> <thead> <tr> <th colspan="2">현장체험 제공인력</th> </tr> </thead> <tbody> <tr> <td>㉔</td> <td>-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td> </tr> <tr> <td>학</td> <td>-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td> </tr> <tr> <td>위</td> <td>-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td> </tr> <tr> <td>소</td> <td>※ “군” 단위 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td> </tr> <tr> <td>지</td> <td></td> </tr> <tr> <td>자</td> <td></td> </tr> </tbody> </table>	현장체험 제공인력		㉔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학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위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소	※ “군” 단위 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지		자					
현장체험 제공인력																			
㉔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학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위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소	※ “군” 단위 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지																			
자																			
지원기간 및 재판정	<p>① 기간 : 12개월</p> <p>② 재판정 : 1회 (최대 24개월)</p>																		
서비스 횟수/가 격/결제	<p>① 서비스 횟수 및 시간</p> <p>㉔ 비전형성 정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1:1인~2인) : 월 4회 / 회당 60분 - 집단규모(1:3인~4인) : 월 4회 / 회당 90분 - 집단규모(1:5인~10인) : 월 4회 / 회당 120분 <p>㉕ 현장체험 통합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1인~2인) / 회당 60분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3인~4인) / 회당 90분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5인~10인) / 회당 120분 - 현장체험(1~10인이내) / 월2회 회당 240분 / 월1회 회당 360분 -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정서지원 2회를 포함하여 현장체험 2회 또는 1회 실시 <table border="1" data-bbox="368 1525 1147 1655"> <tbody> <tr> <td>- 예시</td> <td>※ 월4회 또는 월3회 중 택1하여 실시</td> </tr> <tr> <td>· 월4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2회)</td> <td></td> </tr> <tr> <td>· 월3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1회)</td> <td></td> </tr> </tbody> </table> <p>② 월 14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p> <table border="1" data-bbox="355 1722 1367 1957">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126,000원(90%)</td> <td>14,000원(10%)</td> </tr> <tr> <td>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d> <td>112,000원(80%)</td> <td>28,000원(20%)</td> </tr> <tr> <td>3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40% 이하)</td> <td>98,000원(70%)</td> <td>42,000원(30%)</td> </tr> </tbody> </table>	- 예시	※ 월4회 또는 월3회 중 택1하여 실시	· 월4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2회)		· 월3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1회)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000원(90%)	14,000원(10%)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12,000원(80%)	28,000원(20%)	3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40% 이하)	98,000원(70%)	42,000원(30%)
- 예시	※ 월4회 또는 월3회 중 택1하여 실시																		
· 월4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2회)																			
· 월3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1회)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000원(90%)	14,000원(10%)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12,000원(80%)	28,000원(20%)																	
3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40% 이하)	98,000원(70%)	42,000원(30%)																	

항 목	내 용														
	<p>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63 369 1372 600"> <thead> <tr> <th rowspan="2">등급</th> <th colspan="2">정부지원금</th> </tr> <tr> <th>프로그램(비전 현장) 월 4회</th> <th>비전형성 정서지원(2회) + 현장체험 통합형(1회)</th> </tr> </thead> <tbody> <tr> <td>1</td> <td>31,500원</td> <td>42,000원</td> </tr> <tr> <td>2</td> <td>28,000원</td> <td>37,000원(3회차 38,000원)</td> </tr> <tr> <td>3</td> <td>24,500원</td> <td>32,000원(3회차 34,000원)</td> </tr> </tbody> </table>	등급	정부지원금		프로그램(비전 현장) 월 4회	비전형성 정서지원(2회) + 현장체험 통합형(1회)	1	31,500원	42,000원	2	28,000원	37,000원(3회차 38,000원)	3	24,500원	32,000원(3회차 34,000원)
등급	정부지원금														
	프로그램(비전 현장) 월 4회	비전형성 정서지원(2회) + 현장체험 통합형(1회)													
1	31,500원	42,000원													
2	28,000원	37,000원(3회차 38,000원)													
3	24,500원	32,000원(3회차 34,000원)													
서비스 내 용 절 차	<p>①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아래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 실시 <p>※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 함(필수)</p> <p>Coopersmith(자아존중감척도), SDQ-kr(강점·난점설문지)</p> <p>※ 필요 시 기관의 재량으로 아래의 검사도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p> <p>아동인성평정척도(아동인성검사), 열등감 척도, 사회적기술검사, 또래관계검사, MI진로적성검사, 사회성 척도</p> <table border="1" data-bbox="351 1176 1380 2004">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 및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 월 1회이상 부모상담 및 교육실시(공통)</td> </tr> <tr> <td>기본 서비스</td> <td> <p>㉔ 비전형성 정서지원</p> <p>▷ 서비스 구성 : 분야별 최소 연4회기 이상 필수 구성</p> <table border="1" data-bbox="475 1500 1348 1944"> <tbody> <tr> <td>자기이해</td> <td>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td> </tr> <tr> <td>사회성향상</td> <td>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td> </tr> <tr> <td>진로탐색</td> <td>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td> </tr> <tr> <td>자기주도력</td> <td>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월 1회이상 부모상담 및 교육실시(공통)	기본 서비스	<p>㉔ 비전형성 정서지원</p> <p>▷ 서비스 구성 : 분야별 최소 연4회기 이상 필수 구성</p> <table border="1" data-bbox="475 1500 1348 1944"> <tbody> <tr> <td>자기이해</td> <td>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td> </tr> <tr> <td>사회성향상</td> <td>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td> </tr> <tr> <td>진로탐색</td> <td>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td> </tr> <tr> <td>자기주도력</td> <td>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td> </tr> </tbody> </table>	자기이해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	사회성향상	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	진로탐색	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	자기주도력	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월 1회이상 부모상담 및 교육실시(공통)														
기본 서비스	<p>㉔ 비전형성 정서지원</p> <p>▷ 서비스 구성 : 분야별 최소 연4회기 이상 필수 구성</p> <table border="1" data-bbox="475 1500 1348 1944"> <tbody> <tr> <td>자기이해</td> <td>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td> </tr> <tr> <td>사회성향상</td> <td>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td> </tr> <tr> <td>진로탐색</td> <td>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td> </tr> <tr> <td>자기주도력</td> <td>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td> </tr> </tbody> </table>	자기이해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	사회성향상	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	진로탐색	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	자기주도력	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						
자기이해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														
사회성향상	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														
진로탐색	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														
자기주도력	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														

항 목	내 용												
	<p>㉠ 현장체험 통합형</p> <p>▷ 서비스구성 : 비전형성 정서지원 24회기(분야별 각 4회기 이상) + 현장체험 24회기(240분) 또는 12회기(360분)</p> <table border="1" data-bbox="454 479 1366 949"> <tr> <td data-bbox="454 479 523 864" rowspan="4">비 전 형 성 정 서 지 원</td> <td data-bbox="523 479 619 555">자기 이해</td> <td data-bbox="619 479 1366 555">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td> </tr> <tr> <td data-bbox="523 555 619 672">사회성 향상</td> <td data-bbox="619 555 1366 672">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td> </tr> <tr> <td data-bbox="523 672 619 748">진로 탐색</td> <td data-bbox="619 672 1366 748">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td> </tr> <tr> <td data-bbox="523 748 619 864">자기 주도력</td> <td data-bbox="619 748 1366 864">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td> </tr> <tr> <td data-bbox="454 864 523 949">현장 체험</td> <td colspan="2" data-bbox="523 864 1366 949">사회·과학·직업체험 프로그램 혼합 운영(진로탐색, 체험을 통한 지식 습득)</td> </tr> </table> <p>*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체험1회는 동일 일자에 연속 진행 불가</p> <p>②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육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비 전 형 성 정 서 지 원	자기 이해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	사회성 향상	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	진로 탐색	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	자기 주도력	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	현장 체험	사회·과학·직업체험 프로그램 혼합 운영(진로탐색, 체험을 통한 지식 습득)	
비 전 형 성 정 서 지 원	자기 이해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										
	사회성 향상		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										
	진로 탐색		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										
	자기 주도력	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											
현장 체험	사회·과학·직업체험 프로그램 혼합 운영(진로탐색, 체험을 통한 지식 습득)												
안전관리 기준	<p>▷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의사항	<p>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p> <p>②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 결제)</p> <p>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p> <p>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p>												

4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031109) / 시·군 공동서비스

항 목		내 용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예방 지원									
추진지역 (19개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X	○	X	○	○	X	○	○	○	○	X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	○	X	X	X	X	X	X	○	X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	○	X	○	○	○	○	○	○	
이용대상 (소득·연령· 육구충족기준 모두 충족)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연령 기준	만 7세 ~ 12세이하 아동									
	육구 기준	<p>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면서 다음 <①, ②, ③, ④>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p> <p>①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드림스타트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p> <p>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p> <p>③ 학교장(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Wee센터(Wee클래스)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p> <p>④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급,2급)의 소견을 받은 아동(소견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p> <p>※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명시된 아동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p>									
	우선 순위	<p>①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p> <p>②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드림스타트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p> <p>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p> <p>④ 학교장(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Wee센터(Wee클래스)가 추천하는 아동</p> <p>※ 학교장 추천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학교에 속한 아동에 한해 추천 가능</p> <p>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p> <p>⑥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p>									
중복 제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과 중복지원 불가										

항 목	내 용										
제공기관 기 준	제 공 기 관	<p>‘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p> <p>※ 시설기준: 타 지역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서비스 전용면적 33㎡ 이상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의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함. 「최대 집단규모(5명) 기준 총 16.5㎡(1인당 3.3㎡)이상」</p> <p>※ 학교, 학원, 교회, 주택 등의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p>									
	제 공 인 력	<p>‘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적합한 인력</p> <p>①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p> <table border="1" data-bbox="515 741 1385 1223"> <tr> <td data-bbox="515 741 635 857">㉗ 학위 소지자</td> <td data-bbox="635 741 1385 857">음악·미술·예술·놀이 치료(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자</td> </tr> <tr> <td data-bbox="515 857 635 1223">㉘ 학위 및 민간 자격증</td> <td data-bbox="635 857 1385 1223"> <p>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음악, 미술, 공예, 무용 분야 등 학사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p> <p>“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놀이 치료(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1)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p> <p>2)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보유</p> </td> </tr> </table> <p>※ (㉗, ㉘)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p> <p>② 클래식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p>	㉗ 학위 소지자	음악·미술·예술·놀이 치료(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자	㉘ 학위 및 민간 자격증	<p>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음악, 미술, 공예, 무용 분야 등 학사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p> <p>“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놀이 치료(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1)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p> <p>2)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보유</p>					
㉗ 학위 소지자	음악·미술·예술·놀이 치료(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자										
㉘ 학위 및 민간 자격증	<p>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음악, 미술, 공예, 무용 분야 등 학사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p> <p>“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놀이 치료(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1)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p> <p>2)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보유</p>										
지원기간 및 재판정	<p>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집단(1:1~5) 주 2회(월 8회),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p> <p>② 기 간 : 12개월(재판정 1회)</p> <p>③ 재판정 :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p>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p>①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p> <table border="1" data-bbox="379 1738 1362 1895"> <thead> <tr> <th data-bbox="379 1738 906 1778">구 분</th> <th data-bbox="906 1738 1134 1778">정부지원</th> <th data-bbox="1134 1738 1362 1778">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9 1778 906 1818">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 data-bbox="906 1778 1134 1818">180,000원(90%)</td> <td data-bbox="1134 1778 1362 1818">20,000원(10%)</td> </tr> <tr> <td data-bbox="379 1818 906 1895">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 data-bbox="906 1818 1134 1895">160,000원(80%)</td> <td data-bbox="1134 1818 1362 1895">40,000원(20%)</td> </tr> </tbody> </table> <p>②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1등급) 22,500원/회, (2등급) 20,000원/회</p>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90%)	20,000원(10%)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80%)	40,000원(20%)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90%)	20,000원(10%)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80%)	40,000원(20%)									

항 목	내 용															
서비스 내 용 절 차	<p>①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 순화 프로그램 제공</p> <table border="1" data-bbox="355 416 1382 857"> <thead> <tr> <th data-bbox="355 416 443 450">구분</th> <th data-bbox="443 416 1225 450">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25 416 1382 4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5 450 443 495">필수</td> <td data-bbox="443 450 1225 495">㉞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제공기간 중) ㉟ 사전사후 심리 검사</td> <td data-bbox="1225 450 1382 495"></td> </tr> <tr> <td data-bbox="355 495 443 674">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443 495 1225 674">㉞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클래식 오케스트라 편성과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5명 이하 소그룹) ※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플룻, 클래식 기타(Classic Guitar), 색소폰, 트럼펫 외 불가</td> <td data-bbox="1225 495 1382 674">주1회 (월4회)</td> </tr> <tr> <td data-bbox="355 674 443 819"></td> <td data-bbox="443 674 1225 819">㉟ 정서순화프로그램 - 미술, 음악, 예술, 놀이 심리 또는 상담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5명 이하 소그룹)</td> <td data-bbox="1225 674 1382 819">주1회 (월4회)</td> </tr> <tr> <td data-bbox="355 819 443 857"></td> <td data-bbox="443 819 1225 857">㊱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td> <td data-bbox="1225 819 1382 857">반기별 1회</td> </tr> </tbody> </table> <p>②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심리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시 사후심리검사 의무 실시) <p>※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함(필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p>자아존중감척도(Coopersmith), 강점·난점설문지(SDQ-kr)</p> </div>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필수	㉞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제공기간 중) ㉟ 사전사후 심리 검사		기본 서비스	㉞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클래식 오케스트라 편성과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5명 이하 소그룹) ※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플룻, 클래식 기타(Classic Guitar), 색소폰, 트럼펫 외 불가	주1회 (월4회)		㉟ 정서순화프로그램 - 미술, 음악, 예술, 놀이 심리 또는 상담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5명 이하 소그룹)	주1회 (월4회)		㊱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필수	㉞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제공기간 중) ㉟ 사전사후 심리 검사															
기본 서비스	㉞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클래식 오케스트라 편성과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5명 이하 소그룹) ※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플룻, 클래식 기타(Classic Guitar), 색소폰, 트럼펫 외 불가	주1회 (월4회)														
	㉟ 정서순화프로그램 - 미술, 음악, 예술, 놀이 심리 또는 상담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5명 이하 소그룹)	주1회 (월4회)														
	㊱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유의사항	<p>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p> <p>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1일 2회 정상결제 허용(클래식 1회, 정서순화 1회)</p> <p>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p> <p>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p>															
안전관리 기준	<p>▶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9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070101) / 전국 표준형 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추진지역 (28개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	○	○	○	○	○	○	○	○	○	○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	○	○	○	○	○	○	X	○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	○	○	○	○	○	○	X	X					
이용대상 (소득·연령· 육구중복지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만 24세이하												
	육구기준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단, 6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우선순위	없음												
	중복제한	없음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①, ②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① 국가 자격증</td> <td>“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 학위 소지자</td> <td>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㉞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㉟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㊱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td> </tr> </table>										① 국가 자격증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② 학위 소지자
① 국가 자격증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② 학위 소지자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㉞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㉟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㊱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항 목	내 용												
지원기간 및 재판정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재판정 5회 (최대 72개월 이용) ※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㉞ 서비스횟수 : 렌탈 12개월 / 정기점검 연 2회 / 수시점검(제한없음) ㉟ 집단규모 : 1:1(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 되어서는 안됨) ② 월 12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table border="1" data-bbox="359 696 1362 936">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108,000원(90%)</td> <td>12,000원(10%)</td> </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96,000원(80%)</td> <td>24,000원(20%)</td> </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td> <td>84,000원(70%)</td> <td>36,000원(30%)</td> </tr> </tbody> </table>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08,000원(90%)	12,000원(10%)	2등급(기준중위소득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96,000원(80%)	24,000원(20%)	3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	84,000원(70%)	36,000원(30%)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08,000원(90%)	12,000원(10%)											
2등급(기준중위소득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96,000원(80%)	24,000원(20%)											
3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	84,000원(70%)	36,000원(30%)											
서 비 스 내 용 절 차	①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data-bbox="359 1093 1385 1630">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 ㉞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㉟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㊱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td> <td>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상담 (제한없음) </td> </tr> </tbody> </table>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실시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의무 검사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㉞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㉟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㊱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상담 (제한없음)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㉞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㉟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㊱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상담 (제한없음)											
유의사항	① 등록유형 : 재가방문형 ②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 제외사업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11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280209) / 시·군 공동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장애인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 서비스로 체력강화 및 자발적 생활 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											
추진지역 (19개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	○	○	○	○	○	○	○	○	X	○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X	○	X	○	○	○	○	X	X	X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X	○	○	○	X	X	X	X	X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충족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만 4세 이상										
	욕구기준	등록 장애인										
	우선순위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고연령자										
	중복제한	없음										
제공기관 기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①, ②,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국가 자격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1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2급),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에 따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									
		② 국가 자격증	초중등교육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체육교육)									
③ 학위 소지자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지원기간 및 재판정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이용)											

항 목	내 용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p>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p> <p>㉞ 개별(1:1) : 요일을 달리하여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p> <p>㉟ 집단(1:2~3) : 요일을 달리하여 주 1회(또는 주 2회) (월 6회), 회당 50분</p> <p>㊱ 집단(1:4~5) : 요일을 달리하여 주 2회(월 8회), 회당 50분</p> <p>②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 24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p> <table border="1" data-bbox="359 560 1353 936">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180,000원(90%)</td> <td>20,000원 ~60,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160,000원(80%)</td> <td>40,000원 ~80,000원</td> </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 160%이하)</td> <td>140,000원(70%)</td> <td>60,000원 ~100,000원</td> </tr> <tr> <td>4등급(기준중위소득160%초과)</td> <td>120,000원(60%)</td> <td>80,000원 ~12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90%)	20,000원 ~6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80%)	40,000원 ~8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 160%이하)	140,000원(70%)	60,000원 ~10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160%초과)	120,000원(60%)	80,000원 ~120,000원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90%)	20,000원 ~6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80%)	40,000원 ~8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 160%이하)	140,000원(70%)	60,000원 ~10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160%초과)	120,000원(60%)	80,000원 ~120,000원																						
서비스 내 용 절 차	<p>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51 1019 1353 1384"> <thead> <tr> <th rowspan="2">등급</th> <th colspan="3">정부지원금</th> </tr> <tr> <th>개별(1:1) 주 1회 / 월 4회</th> <th>집단(1:2~3) 주 1회(주 2회) / 월 6회</th> <th>집단(1:4~5인) 주 2회 / 월 8회</th> </tr> </thead> <tbody> <tr> <td>1</td> <td>45,000원</td> <td>30,000원</td> <td>22,500원</td> </tr> <tr> <td>2</td> <td>40,000원</td> <td>26,000원(6회차 30,000원)</td> <td>20,000원</td> </tr> <tr> <td>3</td> <td>35,000원</td> <td>23,000원(6회차 25,000원)</td> <td>17,500원</td> </tr> <tr> <td>4</td> <td>30,000원</td> <td>20,000원</td> <td>15,000원</td> </tr> </tbody> </table>	등급	정부지원금			개별(1:1) 주 1회 / 월 4회	집단(1:2~3) 주 1회(주 2회) / 월 6회	집단(1:4~5인) 주 2회 / 월 8회	1	45,000원	30,000원	22,500원	2	40,000원	26,000원(6회차 30,000원)	20,000원	3	35,000원	23,000원(6회차 25,000원)	17,500원	4	30,000원	20,000원	15,000원
	등급		정부지원금																					
		개별(1:1) 주 1회 / 월 4회	집단(1:2~3) 주 1회(주 2회) / 월 6회	집단(1:4~5인) 주 2회 / 월 8회																				
	1	45,000원	30,000원	22,500원																				
2	40,000원	26,000원(6회차 30,000원)	20,000원																					
3	35,000원	23,000원(6회차 25,000원)	17,500원																					
4	30,000원	20,000원	15,000원																					
서비스 내 용 절 차	<p>④ 서비스 내용</p> <p>※ 전문가 개입이 불필요한 단순 서비스(산책, 자유수영 등) 제공불가</p> <table border="1" data-bbox="351 1500 1380 1944">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기본 서비스</td> <td>㉞ 사전체력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체력 파악</td> <td>연 1회</td> </tr> <tr> <td>㉟ 사전 상담: 초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td> <td>연 1회</td> </tr> <tr> <td>㊱ 장애의 특성에 따라 초기 상담과 체력측정을 통해 운동 프로그램 선별, 스트레칭, 근력운동, 신체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장애상태에 맞는 맞춤형 개별운동지원</td> <td>주 2회 월 8회 (요일을 달리하여)</td> </tr> <tr> <td>㊲ 반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건강 및 체력의 변화추이 확인 (필요 시 월별 또는 분기별 측정가능)</td> <td>반기별 1회</td> </tr> <tr> <td>㊳ 사후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체력 향상검증</td> <td>연 1회</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㉞ 사전체력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체력 파악	연 1회	㉟ 사전 상담: 초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	연 1회	㊱ 장애의 특성에 따라 초기 상담과 체력측정을 통해 운동 프로그램 선별, 스트레칭, 근력운동, 신체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장애상태에 맞는 맞춤형 개별운동지원	주 2회 월 8회 (요일을 달리하여)	㊲ 반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건강 및 체력의 변화추이 확인 (필요 시 월별 또는 분기별 측정가능)	반기별 1회	㊳ 사후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체력 향상검증	연 1회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㉞ 사전체력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체력 파악	연 1회																					
		㉟ 사전 상담: 초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	연 1회																					
㊱ 장애의 특성에 따라 초기 상담과 체력측정을 통해 운동 프로그램 선별, 스트레칭, 근력운동, 신체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장애상태에 맞는 맞춤형 개별운동지원		주 2회 월 8회 (요일을 달리하여)																						
㊲ 반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건강 및 체력의 변화추이 확인 (필요 시 월별 또는 분기별 측정가능)		반기별 1회																						
㊳ 사후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체력 향상검증		연 1회																						
서비스 내 용 절 차	<p>* 생애주기에 따른 운동 목적 설정 및 운동 프로그램 적용</p>																							

항 목	내 용
	<p>②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서비스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표 및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초기 상담 및 건강체력측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반기별 체력측정 실시 및 만족도 욕구 조사를 통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 - 4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축적된 건강 체력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종료 안내문 발송 <p>③ 서비스 장소 (혼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보유 운동 지도실 -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서비스 장소 확보 - 대상자 자택
안전관리 기준	<p>▶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서비스 제공시 재가+집단 허용)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14 치유농업서비스(992309) / 시·군 공동서비스 / 신규사업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심리·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며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추진지역 (9개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	X	X	○	X	X	X	X	○	X	X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X	○	○	X	X	X	X	○	○	X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X	X	X	X	X	○	X	X	X	○										
이용대상 (소득·연령· 육구장부 모두 충족)	소득 기준	없음																	
	연령 기준	만 10세 이상																	
	육구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상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제출한 자 ②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제출한 자																	
	우 선 순 위	①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② 취업(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등 포함) 및 직업훈련 참여자 ③ 다자녀 가구의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세자녀 이상) ④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⑤ 법정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⑥ 중복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상 발달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장애 2가지 이상) ⑦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⑧ 다문화 가정																	
	중 복 제 한	없음																	
제 공 기 관 기 준	제 공 기 관	<p>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기관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기관</p> <p>※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필수 구비</p> <p>※ 제공기관 등록신청 시 등록 요건 검토를 위한 현장심사 실시 예정</p> <p>※ 시·군에 제공기관 등록 시 경기도 및 지원단으로부터 사업계획 컨설팅을 협조받을 수 있음</p> <p>※ 아래의 시설장비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시설</td> <td>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내 공간 면적 50㎡ 이상 * 타서비스와 공용 가능</td> </tr> <tr> <td>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외 공간 면적 330㎡ 이상 * 치유농업서비스 전용면적만 인정 * 치유농장이 교육농장, 체험농장, 관광농장을 겸하고 있을 경우 전용면적 인정범위 : 치유농업서비스 이용자가 60%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용면적으로 인정함.</td> </tr> <tr> <td>작물 재배 공간 및 돌봄 동물 활용 공간 확보 필수</td> </tr> <tr> <td>실외 공간과 농축산물 생산공간 분리</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내 공간 면적 50㎡ 이상 * 타서비스와 공용 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외 공간 면적 330㎡ 이상 * 치유농업서비스 전용면적만 인정 * 치유농장이 교육농장, 체험농장, 관광농장을 겸하고 있을 경우 전용면적 인정범위 : 치유농업서비스 이용자가 60%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용면적으로 인정함.	작물 재배 공간 및 돌봄 동물 활용 공간 확보 필수	실외 공간과 농축산물 생산공간 분리
구분	기준																		
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내 공간 면적 50㎡ 이상 * 타서비스와 공용 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외 공간 면적 330㎡ 이상 * 치유농업서비스 전용면적만 인정 * 치유농장이 교육농장, 체험농장, 관광농장을 겸하고 있을 경우 전용면적 인정범위 : 치유농업서비스 이용자가 60%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용면적으로 인정함.																		
	작물 재배 공간 및 돌봄 동물 활용 공간 확보 필수																		
	실외 공간과 농축산물 생산공간 분리																		

항 목	내 용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div style="margin-bottom: 5px;">장비</div> <div style="margin-bottom: 5px;">안전</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div style="margin-bottom: 5px;">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 설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확보)</div> <div style="margin-bottom: 5px;">세면대 설치 (접근성, 안전성, 편리성 확보)</div> <div style="margin-bottom: 5px;">음수대 설치 (접근성, 안전성, 편리성 확보)</div> <div style="margin-bottom: 5px;">배상책임보험 가입</div> <div style="margin-bottom: 5px;">소화기 설치 (접근성, 충분성)</div> <div style="margin-bottom: 5px;">구급약품함 구비</div> </div>										
제 공 인 력		<p>※ 아래의 ①~④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9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국가 자격</td> <td>「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유농업사 1~2급을 취득하고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 국가 자격 및 경력</td> <td>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증 :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하는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에 한함 (별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학위 및 경력</td> <td>심리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학(상담·심리 석사 학위자), 특수교육학·특수체육학, 재활학(언어·음악·미술·행동·놀이·재활학, 작업치료학), 원예치료학 등 심리·상담·사회복지·교육·재활 관련 전공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전문학사학사 학위 취득 후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2. 석사박사 학위 취득 후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6개월(또는 100시간 상당) 이상인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 농업인 및 치유 농 업 시설 운영자 교육</td> <td>농업인이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 운영자 교육 (150시간) 수료하고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 단 교육부 장관이 학력(학점)을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장애인복지·상담·교육 관련 5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2025년 1월부터 적용, 2025년 이전 등록 제공인력의 경우 1년 이내에 필수과목이수를 완료해야, 차년도에도 사업의 계속 참여가 가능함. ※필수 5과목: 특수아상담,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지적장애아</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① 국가 자격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유농업사 1~2급을 취득하고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② 국가 자격 및 경력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증 :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하는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에 한함 (별첨)	③ 학위 및 경력	심리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학(상담·심리 석사 학위자), 특수교육학·특수체육학, 재활학(언어·음악·미술·행동·놀이·재활학, 작업치료학), 원예치료학 등 심리·상담·사회복지·교육·재활 관련 전공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전문학사학사 학위 취득 후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2. 석사박사 학위 취득 후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6개월(또는 1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④ 농업인 및 치유 농 업 시설 운영자 교육	농업인이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 운영자 교육 (150시간) 수료하고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 단 교육부 장관이 학력(학점)을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장애인복지·상담·교육 관련 5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2025년 1월부터 적용, 2025년 이전 등록 제공인력의 경우 1년 이내에 필수과목이수를 완료해야, 차년도에도 사업의 계속 참여가 가능함. ※필수 5과목: 특수아상담,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지적장애아
구분	내용											
① 국가 자격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유농업사 1~2급을 취득하고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② 국가 자격 및 경력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증 :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하는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에 한함 (별첨)											
③ 학위 및 경력	심리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학(상담·심리 석사 학위자), 특수교육학·특수체육학, 재활학(언어·음악·미술·행동·놀이·재활학, 작업치료학), 원예치료학 등 심리·상담·사회복지·교육·재활 관련 전공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전문학사학사 학위 취득 후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2. 석사박사 학위 취득 후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6개월(또는 1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④ 농업인 및 치유 농 업 시설 운영자 교육	농업인이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 운영자 교육 (150시간) 수료하고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 단 교육부 장관이 학력(학점)을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장애인복지·상담·교육 관련 5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2025년 1월부터 적용, 2025년 이전 등록 제공인력의 경우 1년 이내에 필수과목이수를 완료해야, 차년도에도 사업의 계속 참여가 가능함. ※필수 5과목: 특수아상담,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지적장애아											

항 목	내 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518 293 614 342">구분</th> <th data-bbox="614 293 1412 34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18 342 614 658">수료자</td> <td data-bbox="614 342 1412 658"> <p>교육,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p> <p>*교육부 장관이 학력(학점)을 인정하는 교육기관</p> <p>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 해당하는 학교</p> <p>②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법 29조) 학점은행 기관, (법 30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법 32조)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3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p> <p>③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기능대학, 기술교육대학(법 39조, 52조)</p>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수료자	<p>교육,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p> <p>*교육부 장관이 학력(학점)을 인정하는 교육기관</p> <p>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 해당하는 학교</p> <p>②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법 29조) 학점은행 기관, (법 30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법 32조)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3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p> <p>③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기능대학, 기술교육대학(법 39조, 52조)</p>																					
구분	내용																										
수료자	<p>교육,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p> <p>*교육부 장관이 학력(학점)을 인정하는 교육기관</p> <p>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 해당하는 학교</p> <p>②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법 29조) 학점은행 기관, (법 30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법 32조)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3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p> <p>③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기능대학, 기술교육대학(법 39조, 52조)</p>																										
지원기간 및 재판정	<p>① 기 간: 12개월</p> <p>② 재판정: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p>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p>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p> <p>② 서비스 횟수: 주 1회(월 4회) / 회당 120분(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시간 포함)</p> <p>④ 집단규모: 개별(1:1)~집단(1:10)</p> <p>※ 1:6 이상 규모 시 보조 인력 투입 필수 (단, 서비스 이용자 가족이나 보조인이 동행 및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1:6(집단규모) 산정 시 제외하고 산정함)</p> <p>② 서비스 가격: 월 22만 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p> <table border="1" data-bbox="368 1059 1374 1357">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td> <td>198,000원(90%)</td> <td>22,000원(10%)</td> </tr> <tr> <td>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td> <td>176,000원(80%)</td> <td>44,000원(20%)</td> </tr> <tr> <td>3등급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180% 이하)</td> <td>154,000원(70%)</td> <td>66,000원(30%)</td> </tr> <tr> <td>4등급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td> <td>132,000원(60%)</td> <td>88,000원(40%)</td> </tr> </tbody> </table> <p>③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68 1413 1374 1637"> <thead> <tr> <th>등급</th> <th>정부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49,500원</td> </tr> <tr> <td>2등급</td> <td>44,000원</td> </tr> <tr> <td>3등급</td> <td>38,500원</td> </tr> <tr> <td>4등급</td> <td>33,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8,000원(90%)	22,000원(10%)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176,000원(80%)	44,000원(20%)	3등급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180% 이하)	154,000원(70%)	66,000원(30%)	4등급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132,000원(60%)	88,000원(40%)	등급	정부지원금	1등급	49,500원	2등급	44,000원	3등급	38,500원	4등급	33,000원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8,000원(90%)	22,000원(10%)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176,000원(80%)	44,000원(20%)																									
3등급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180% 이하)	154,000원(70%)	66,000원(30%)																									
4등급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132,000원(60%)	88,000원(40%)																									
등급	정부지원금																										
1등급	49,500원																										
2등급	44,000원																										
3등급	38,500원																										
4등급	33,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절차	<p>①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63 1731 1377 1968"> <thead> <tr> <th>서비스 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필수</td> <td> <p>㉞ 사전·사후 검사</p> <p>- 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p> <p>㉟ 반기별 모니터링</p> <p>- 치유농업 서비스 참여자 만족도 조사</p> </td> <td>-</td> </tr> </tbody> </table>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필수	<p>㉞ 사전·사후 검사</p> <p>- 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p> <p>㉟ 반기별 모니터링</p> <p>- 치유농업 서비스 참여자 만족도 조사</p>	-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필수	<p>㉞ 사전·사후 검사</p> <p>- 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p> <p>㉟ 반기별 모니터링</p> <p>- 치유농업 서비스 참여자 만족도 조사</p>	-																									

항 목	내 용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서비스 (치유농업 서비스)	㉗ 농장 및 주변 환경을 활용한 서비스 - 농장 둘러보기, 농장 유지 및 보수, 도구 및 장비 정리, 주변 환경 둘러보기(산책하기), ㉘ 원예 또는 재배 활동 서비스 - 심기, 기르기, 수확 하기 등의 노작 활동 ㉙ 동물 교감 및 돌봄 활동 - 동물과 뛰어놀기(산책하기), 1차 생산품(우유, 달걀 등) 생산하기, 동물 돌보기, 동물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등 ㉚ 실내 활동 서비스 - 농작물을 활용한 요리하기, 창작활동 등 ㉛ 치유농장 특성화 서비스 - 제공기관별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㉗~㉛ 모두 포함하여 사업계획
	② 서비스 제공 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사전검사 실시, 연간 서비스 제공계획 안내(조율) - 3단계: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사후검사 실시 및 피드백 제공(종결)		
유의사항	① 등록 유형: 기관방문형 ② 결제 시기: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사전·사후 검사 2회 이상(시작 전 및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연 2회(반기별 실시) ⑤ 제공인력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		

〈참고 : 농촌진흥청 인정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

국가자격					
기술자격	기술·기능 분야	전문자격	청소년상담사(2급) 장애인재활상담사(2급) 사회복지사(2급) 보건교육사(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보육교사(2급) 평생교육사(2급) 산림치유지도사(2급)	청소년상담사(1급) 장애인재활상담사(1급) 사회복지사(1급)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보육교사(1급), 정교사(2급) 평생교육사(1급), 산림치유지도사(1급), 나무의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정교사(1급)
		기능사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조경,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조경, 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서비스 분야		임상심리사(2급) 직업상담사(2급)	임상심리사(1급) 직업상담사(1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조경,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축산, 산림

16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080909) / 시·도 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추진지역 (31개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	○	○	○	○	○	○	○	○	○	○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	○	○	○	○	○	○	○	○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	○	○	○	○	○	○	○	○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충족기준 모두 충족)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기준	만 60세이상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연령기준 미적용										
	욕구 기준	아래의 욕구 기준 중 1가지 충족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③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보훈대상구분 코드 21, 23, 35에 해당하는 자) ※ ①, ③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우선 순위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 하고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2. 만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3. 만 60세 이상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최초 신청자										
	중복 제한	없음										
제공기관 기 준	제공 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특히 제5호, 퇴폐·음란·도박 관련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에 한정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2조를 충족하는 경우,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제공 인력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에 따라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이 없어도 인력배치기준 충족										

항 목	내 용						
지원기간 및 재판정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이용)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 ② 서비스 가격 : 월 168천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table border="1" data-bbox="363 517 1385 600"> <thead> <tr> <th data-bbox="363 517 703 562">구 분</th> <th data-bbox="703 517 1043 562">정부지원</th> <th data-bbox="1043 517 1385 562">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3 562 703 600">전체</td> <td data-bbox="703 562 1043 600">151,200원(90%)</td> <td data-bbox="1043 562 1385 600">16,800원(10%)</td> </tr> </tbody> </table>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37,800원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전체	151,200원(90%)	16,800원(10%)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전체	151,200원(90%)	16,800원(10%)					
서 비 스 내 용 절 차	① 서비스 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유의사항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제공기관 선택)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19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서비스(992409) / 시군 공동서비스 / 통합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가족관계 개선 및 건강한 가족기능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추진지역 (17개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	○	○	○	○	X	○	○	○	○	○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	○	○	○	X	○	○	X	X	X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X	X	X	X	X	X	X	X	X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 기준	없음										
	연령 기준	만24세이하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정										
	욕구 기준	<p>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p> <p>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증빙서류 제출)</p> <p>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클래스)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p> <p>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p> <p>▶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p> <p>-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는 MMPI-2, MMPI-A, KPRC, CBCL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p> <p>※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보호자(주양육자)</p> <p>※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 아동</p> <p>※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p> <p>※ ① 한부모가족은 법정한부모와 일반한부모 포함(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부모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증빙)</p> <p>※ 가구당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가구 내 아동·청소년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1회(12개월) 신청·이용 후, 다음 신청시기에 다른 아동·청소년으로 신청 가능)</p>										
	우선순위	<p>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p> <p>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p> <p>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p>										
중복제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제공기관 기 준	제 공 기 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 공 인 력	<p>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518 414 1348 862"> <tr> <td data-bbox="518 414 646 616">① 국가 자격증</td> <td data-bbox="646 414 1348 616">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 가족상담·치료·복지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필수 </td> </tr> <tr> <td data-bbox="518 616 646 862">② 학위 소지자</td> <td data-bbox="646 616 1348 862"> 심리, 상담, 교육학(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자 이상), 가족상담 관련학, 예술(미술,놀이)치료·상담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학사는 성인심리지원 실무경력 1년 이상, 석사이상 소지자는 성인심리지원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가족상담·치료·복지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필수 </td> </tr> </table> <p>※ (공통)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p>	① 국가 자격증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 가족상담·치료·복지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필수	② 학위 소지자	심리, 상담, 교육학(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자 이상), 가족상담 관련학, 예술(미술,놀이)치료·상담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학사는 성인심리지원 실무경력 1년 이상, 석사이상 소지자는 성인심리지원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가족상담·치료·복지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필수														
① 국가 자격증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 가족상담·치료·복지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필수																			
② 학위 소지자	심리, 상담, 교육학(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자 이상), 가족상담 관련학, 예술(미술,놀이)치료·상담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학사는 성인심리지원 실무경력 1년 이상, 석사이상 소지자는 성인심리지원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가족상담·치료·복지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필수																			
지원기간 및 재판정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해당없음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월4회(주1회), 회당 60분 ㉡ 총 48회기 중 필수 24회기 이상, 선택 24회기 이하로 서비스 구성 ※ 예시 : ‘필수 24회기 + 선택 24회기’ 또는 ‘필수 48회기’로 서비스 구성 가능 ㉢ 집단규모 - 가족상담프로그램 : 집단(1:1가구 2인이상) - 가족상담프로그램 외 : 1:1 ~ 1:6인 이내 ※ 가족상담프로그램은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동시 참여해야함, 개별상담 불가 ※ 가족공동체프로그램만 1:2가구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집단규모 준수 필수)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table border="1" data-bbox="359 1545 1396 1892">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162,000원(90%)</td> <td>18,000~88,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d> <td>144,000원(80%)</td> <td>36,000~106,000원</td> </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td> <td>126,000원(70%)</td> <td>54,000~124,000원</td> </tr> <tr> <td>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td> <td>90,000원(50%)</td> <td>90,000~160,000원</td> </tr> <tr> <td>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td> <td>36,000원(20%)</td> <td>144,000~214,000원</td> </tr> </tbody> </table> <p>※ 가격탄력제 도입에 따라,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단가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5호] 활용)</p>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90%)	18,000~88,000원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80%)	36,000~10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70%)	54,000~12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90,000원(50%)	90,000~16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36,000원(20%)	144,000~214,000원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90%)	18,000~88,000원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80%)	36,000~10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70%)	54,000~12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90,000원(50%)	90,000~16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36,000원(20%)	144,000~214,000원																		

항 목	내 용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table border="1" data-bbox="363 353 1383 638"> <thead> <tr> <th>등급</th> <th>정부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40,500원</td> </tr> <tr> <td>2등급</td> <td>36,000원</td> </tr> <tr> <td>3등급</td> <td>31,500원</td> </tr> <tr> <td>4등급</td> <td>22,500원</td> </tr> <tr> <td>5등급</td> <td>9,000원</td> </tr> </tbody> </table>			등급	정부지원금	1등급	40,500원	2등급	36,000원	3등급	31,500원	4등급	22,500원	5등급	9,000원					
등급	정부지원금																			
1등급	40,500원																			
2등급	36,000원																			
3등급	31,500원																			
4등급	22,500원																			
5등급	9,000원																			
서비스 내 용 절 차	④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data-bbox="359 694 1396 1429">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9 739 534 996"> ㉑ 가족상담 프로그램 <필수> </td> <td data-bbox="534 739 1189 996"> <①, ② 중 택1 또는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② 예술(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 다양한 예술(미술,놀이)매체를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제공 </td> <td data-bbox="1189 739 1396 1429" rowspan="4"> 총 48회기 (필수 24회기 이상, 선택 24회기 이하)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data-bbox="359 996 534 1142"> ㉒ 부모성장 프로그램 <선택> </td> <td data-bbox="534 996 1189 1142"> 부모성장프로그램 -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상담, 코칭 - 부부관계 이해 프로그램 - 부부소통 프로그램 </td> </tr> <tr> <td data-bbox="359 1142 534 1288"> ㉓ 자녀성장 프로그램 <선택> </td> <td data-bbox="534 1142 1189 1288"> 자녀성장프로그램 - 자녀 문제행동 개입 프로그램 -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td> </tr> <tr> <td data-bbox="359 1288 534 1429"> ㉔ 가족공동체프 로그램 <선택> </td> <td data-bbox="534 1288 1189 1429">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프로그램 - 가족공동체 치유프로그램 </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㉑ 가족상담 프로그램 <필수>	<①, ② 중 택1 또는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② 예술(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 다양한 예술(미술,놀이)매체를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제공	총 48회기 (필수 24회기 이상, 선택 24회기 이하) *1일 1회 서비스 원칙	㉒ 부모성장 프로그램 <선택>	부모성장프로그램 -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상담, 코칭 - 부부관계 이해 프로그램 - 부부소통 프로그램	㉓ 자녀성장 프로그램 <선택>	자녀성장프로그램 - 자녀 문제행동 개입 프로그램 -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㉔ 가족공동체프 로그램 <선택>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프로그램 - 가족공동체 치유프로그램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㉑ 가족상담 프로그램 <필수>	<①, ② 중 택1 또는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② 예술(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 다양한 예술(미술,놀이)매체를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제공	총 48회기 (필수 24회기 이상, 선택 24회기 이하) *1일 1회 서비스 원칙																		
㉒ 부모성장 프로그램 <선택>	부모성장프로그램 -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상담, 코칭 - 부부관계 이해 프로그램 - 부부소통 프로그램																			
㉓ 자녀성장 프로그램 <선택>	자녀성장프로그램 - 자녀 문제행동 개입 프로그램 -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㉔ 가족공동체프 로그램 <선택>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프로그램 - 가족공동체 치유프로그램																			
<p data-bbox="375 1467 614 1500">▶ 서비스 운영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375 1512 1364 1982"> <thead> <tr> <th>프로그램명</th> <th>회기 (총48회기)</th> <th>집단규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필수] 가족상담</td> <td>24회기</td> <td>1:1가구 2인이상</td> <td>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필수 참여</td> </tr> <tr> <td>[선택] 부모성장</td> <td>10회기</td> <td>1:1 또는 1:2</td> <td>부 또는 모 개별·집단 상담 가능</td> </tr> <tr> <td>[선택] 자녀성장</td> <td>10회기</td> <td>1:1 ~ 1:6인</td> <td>자녀 1인 또는 형제, 자매, 남매 등 함께 참석 가능</td> </tr> <tr> <td>[선택] 가족공동체</td> <td>4회기</td> <td>1:2 ~ 1:6인 (2가구 이상 참여 가능)</td> <td>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이하 '가통심') 이용 중인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가능 (가통심 이용 중인 가족이 아닐 경우 참여 불가)</td> </tr> </tbody> </table>	프로그램명	회기 (총48회기)	집단규모	비고	[필수] 가족상담	24회기	1:1가구 2인이상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필수 참여	[선택] 부모성장	10회기	1:1 또는 1:2	부 또는 모 개별·집단 상담 가능	[선택] 자녀성장	10회기	1:1 ~ 1:6인	자녀 1인 또는 형제, 자매, 남매 등 함께 참석 가능	[선택] 가족공동체	4회기	1:2 ~ 1:6인 (2가구 이상 참여 가능)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이하 '가통심') 이용 중인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가능 (가통심 이용 중인 가족이 아닐 경우 참여 불가)
프로그램명	회기 (총48회기)	집단규모	비고																	
[필수] 가족상담	24회기	1:1가구 2인이상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필수 참여																	
[선택] 부모성장	10회기	1:1 또는 1:2	부 또는 모 개별·집단 상담 가능																	
[선택] 자녀성장	10회기	1:1 ~ 1:6인	자녀 1인 또는 형제, 자매, 남매 등 함께 참석 가능																	
[선택] 가족공동체	4회기	1:2 ~ 1:6인 (2가구 이상 참여 가능)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이하 '가통심') 이용 중인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가능 (가통심 이용 중인 가족이 아닐 경우 참여 불가)																	

항 목	내 용
	<p>②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검사 실시) -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실시) <p>※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 함(필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BDI(벡우울척도), BAI(벡불안척도), PSI(양육스트레스척도)</div> <p>※ 필요 시 기관의 재량으로 아래의 검사도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MMPI-2, MMPI-A, KPRC, CBCL, K-BDI-II, K-MSI</div>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20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991409) / 시군 공동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추진지역 (3개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X	X	X	X	X	X	X	X	○	X	X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	X	X	X	X	○	X	X	X	X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X	X	X	X	X	X	X	X	X	X			
이용대상 (소득·연령· 육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만 35세 이상										
	우선순위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 의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중복제한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과 중복지원 불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①, ②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국가 자격증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② 학위 소지자	심리, 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지원기간 및 재판정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진행 ※ 필요 시 이용자 동의하에 집단 상담으로 일부 운영 가능 ② 기 간 : 6개월 ③ 재판정 : 1회 (최대 12개월)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①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90%)			20,000원(10%)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80%)			40,000원(20%)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140,000원(70%)			60,000원(30%)				

항 목	내 용																		
	②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금액 <table border="1" data-bbox="391 358 1082 519"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등급</th> <th>정부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45,000원</td> </tr> <tr> <td>2등급</td> <td>40,000원</td> </tr> <tr> <td>3등급</td> <td>35,000원</td> </tr> </tbody> </table>					등급	정부지원금	1등급	45,000원	2등급	40,000원	3등급	35,000원						
등급	정부지원금																		
1등급	45,000원																		
2등급	40,000원																		
3등급	35,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절 차	①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data-bbox="354 616 1380 113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서비스 구분</th> <th>서비스 종류</th> <th>서비스내용</th> <th>제공 시간</th> <th>제공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기본 서비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전·사후 검사</td> <td>-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 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90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전·사후 각 1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제공</td> <td>-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회당 60분 (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1회씩 월 4회</td> </tr> </tbody> </table> ②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주된 호소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사전검사 - 3단계 : 목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4단계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5단계 :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 					서비스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내용	제공 시간	제공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 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60분 (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 포함)	주 1회씩 월 4회
서비스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내용	제공 시간	제공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 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60분 (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 포함)	주 1회씩 월 4회															
유의사항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